

군산시 공고 제2020-791호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4월 3일

군 산 시 장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가. 법제처 발간 『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』에 따른 정비대상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와 그 외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한자를 포함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나. 어려운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기준 :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변경
나. 변경용어 : 7개

한자어	순화어	한자어	순화어
입방미터	세제곱미터	사리도	자갈도
미연에	미리	녹비	푹거름
지주목	버팀목	구좌	계좌
폭원	너비	계	7개 용어

다. 변경대상 : 조례 9건

- 1)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(제28조)
- 2) 군산시관리방조제법위등에관한조례(제2조)
- 3)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(제2조)
- 4) 군산시 건축 조례(제37조)
- 5) 군산시 주차장 조례(제10조)
- 6) 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(제3조)
- 7)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(제3조)
- 8)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(제27조)
- 9)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(제29조)

3. 의견제출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: 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의견제출할 곳 : 우) 54078 군산시 시청로 17

군산시청 기획예산과(전화 : 063-454-2344, FAX : 063-452-8157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

전화 063-454-2344,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마.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
조례안 : 붙임참고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(안)

- 성 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 (연락이 가능한 휴대폰, 자택, 사무실 등)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산시 조례 제 호

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
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공유재산 관리
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입방미터당”을 “세제공미터당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군산시 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관리방
조제범위등에 관한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입방미터”를 “세제공미터”로 한다.

제3조(「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의 개
정) 「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」 중 일부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 중 “미연에”를 “미리”로 한다.

제4조(「군산시 건축 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건축 조례」 중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3항제3호 후단 중 “지주목”을 “버팀목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군산시 주차장 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주차장 조례」 중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폭원”을 “너비”로 한다.

제6조(「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도
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사리도”를 “자갈도”로 한다.

제7조(「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
 「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 중 일부를
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**녹비작물**”을 “**뜻거름작물**”로 한다.

제8조(「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친환경
 농업육성 지원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2항제3호 중 “**녹비작물**”을 “**뜻거름작물**”로 한다.

제9조(「군산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 「군산시 도시계획 조례」 중
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**현금구좌**”를 “**현금계좌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(제1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8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 · 토석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분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 · 토석 등의 채광물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<u>입방미터당</u>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8조(채광물채취료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세</u> <u>제공미터당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(제2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"제설·제빙"이라 함은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<u>미연</u>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미리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(제3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시 관리방조제) 방조제관리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삼 백만 <u>입방미터</u> 미만의 도 관리방 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 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.</p>	<p>제2조(시 관리방조제) ----- ----- ----- <u>세제곱미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(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, 도로의 <u>폭원</u>,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 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 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 략)</p>	<p>제10조(주차구획선의 표시 등) ①-</p> <p>----- ----- <u>너비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(제6조)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부담금 등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사리도</u>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 개시전 선납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제3조(부담금 등 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자갈도</u>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.</p> <p>③ ~ ⑧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(제7조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용자대상사업) 용자대상사업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으로 한다.</p> <p>1. 작물재배 또는 재배를 위한 시 설사업 : 식용작물, 원예작물, 공예작물, 사료작물, <u>녹비작물</u>, 관상식물 등</p> <p>2. 삭 제</p> <p>3. ~ 14. (생 략)</p>	<p>제3조(용자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 <u>꽃거름작물</u>-----</p> <p>3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(제8조)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사업의 평가 및 시상) ① (생략)</p> <p>②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녹비작물</u> 가꾸기(푸른들 가꾸기)사업 실적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7조(사업의 평가 및 시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꽃거름작물</u> -----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군산시 공고 제2020-797호

「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」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2일

군 산 시 장

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물환경보전법」 및 「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라 용어 정비
- 국가적 재난재해 등으로 사유로 사용료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경영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

2. 주요내용

- 제명을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군산시 군산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개정
- 「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라 용어 정비
 -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, 폐수관거를 폐수관로로
 - 유지관리비를 사용료로, 시설재투자적립금을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정비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의2에 따라 폐수처리시설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함(안 제25조의2 신설)

-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3. 의견제출

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1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: 하수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)
-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○ 의견 제출할 곳

- 우)54078 군산시 시청로 17. 군산시청 하수과 주무관 최성진
- 전자우편: sungjin1239@korea.kr

○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처리계(전화 063-454-549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조례 제 호

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”를 “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폐수종말처리시설”을 “공공폐수처리시설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관리기관“이라 함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“처리시설””을 ““관리기관“이라 함은 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“처리시설”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“관거”를 각각 “관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 부과금, 협의기준초과부담금”을 “사용료, 부과금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공동처리구역”을 “공공폐수처리구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「법」 제48조제1항”을 “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관거”를 “관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「법」 제51조”를 “법 제51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7항 중 “관거”를 각각 “관로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「법」”을 “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”으로, “방지시설업”을 “환경전문공사업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관리방법등”을 “관리방법 등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규칙」 제26조”를 “규칙 제26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오염물질은 「규칙」 제34조”를 “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사업자는 「법」 제32조제8항”을 “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업자는 「법」”을 “사업자는 법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유지관리비의 부담”을 “사용료의 부담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유지관리비의 부담)”을 “(사용료의 부담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“유지관리비””를 ““사용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

“유지관리비”를 “사용료”로, “시설재투자적립금”을 “시설개선충당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지관리비”를 각각 “사용료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시설재투자적립금)”을 “(시설개선충당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설재투자적립금”을 “시설개선충당금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신규투자”를 “신규투자,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용역, 연구개발 등의 용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적립금”을 각각 “시설개선충당금”으로 한다.

2. 추가비용 선납부.

제19조의 제목 “(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)”을 “(사용료의 부과방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유지관리비”를 각각 “사용료”로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유지관리비의 추징)”을 “(추가비용의 추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관거”를 “관로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있어 「법」 제41조”를 “있어 법 제41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유지관리비”를 “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재투자적립금”을 “시설개선충당금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”을 “경우에는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”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부담금의 지원 등)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절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”를 “절차는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제20조”로 한다.

제30조 전단 중 “관거”를 “관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[별표2]사용료 산출기준

1. 산출공식

$$\text{월간 사용료} = (M1 + M2) \times \left(0.2 \frac{Q_i}{\sum_{i=1}^n Q_i} + 0.8 \frac{F(Li)}{\sum_{i=1}^n F(Li)} \right)$$

가. 월간사용료: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, COD, SS, T-N, T-P의 처리되는 소요되는 월간비용

나. M1: 운영관리비(위탁관리비+전력비+용수비)

다. M2: 시설개선충당금

처리시설	재산가액(억원) ①	시설개선 충당금적립율 ②	업체 부담경감 비율 ③
군산2국가산업단지	277.3억원	20 ----- 10,000	월간 일평균 유입량(m ³ /일) ----- 시설용량(m ³ /일)

- 토지가액은 재산가액에서 제외
- 최근 3개월간 평균 오·폐수량 20,000m³/일 이상일 경우 : ① × ②

$$277.3\text{억원} \times \frac{20}{10,000}$$

- 최근 3개월간 평균 오·폐수량 20,000m³/일 이하일 경우 : ① × ② × ③

$$277.3\text{억원} \times \frac{20}{10,000} \times \frac{\text{월간 일평균 유입량(m}^3\text{/일)}}{\text{시설용량(m}^3\text{/일)}}$$

라. Q i : 업소별 월간 오수배출 유량

- 유량계 설치: 검침 유량 기준으로 부과
- 유량계 미설치: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의 80%

마. F(Li) : 오염부하량에 폐수배출유량의 곱

- 폐수 배출 유량: 검침 유량 기준으로 부과
- 오염부하량: 다음식과 같음

$$\text{오염부하량} = \left(\frac{BOD_i + COD_i \times 2}{3} + SS_i + T-N + T-P \right)$$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조례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 및 48조의2 규정에 의거 군산2국가산업단지 <u>폐수종말처리시설</u>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관리기관</u>”이라 함은 <u>군산2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</u>이라 한다)을 운영·관리하는 군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<u>폐수관거</u>”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<u>관거</u>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공공폐수처리시설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관리기관</u>”이라 함은 <u>군산2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(이하 “처리시설”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<u>관로</u>----- ----- ----- - <u>관로</u> ----- -----.</p>

배수설비는 제외한다.

5. “배수설비” 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 등을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.

6. “부담금” 이라 함은 오염원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기본배출 부과금,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말한다.

7. (생략)

제3조(처리구역)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「물환경보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.

제4조(관리운영) ① (생략)

②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법」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오·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) ① (생략)

5.-----
-----관
로-----관로-----
-----.

6.-----
-----사용료, 부과금-----
-----.

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처리구역) -----

-----공공폐수처리구
역-----.

제4조(관리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-----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오·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관리기관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오·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,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대상 오·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오·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7조(배수설비의 설치) ①처리시설에 오·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「법」 제51조에 의거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.

⑤·⑥ (생략)

⑦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·폐수

②-----
 -관로-----

 -----.

제7조(배수설비의 설치) ①-----

 ----- 법 제51조-----

 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 관로-----

 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-----

를 유입처리하는 자는 우수가 폐수관거로 유입되지않도록 우수배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) ①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「법」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의한 상·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유량계 등의 설치) ① (생략)

②설치하여야 할 유량계 등의 형식, 설치위치, 관리방법등은 운영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2조(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) 「규칙」 제26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.

1. ~ 5. (생략)

제13조(폐수 등의 배출기준) ①배출사업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

----- 관로 -----

-----.

제9조(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」
----- 환경전문공사업에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유량계 등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----- 관리방법 등 -----
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) 규칙 제26조 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폐수 등의 배출기준) ①-----

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「규칙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허용기준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.

②폐수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「법」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기준 이내로 배출하여야 한다. 배출허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.

제14조(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) ①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사업자는 「법」 관련조치 및 관리기관의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제3장 유지관리비의 부담

제16조(유지관리비의 부담) ①처리 시설에 오·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(이하 “유지관리비”라 한다)을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구분한다.

③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

----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-----

-----.

②-----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-----

-----.

제14조(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) ①-----
---- 사업자는 법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사용료의 부담

제16조(사용료의 부담) ①-----

----- “사용료” -----
-----.

②사용료-----
----- 시설개선충당금-----.

③사용료-----

2와 같다.

④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· 2. (생략)

제18조(시설재투자적립금) ①시설재투자적립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, 보완, 신규투자.

2. 기본배출부과금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의 선납부.

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적립금의 사용 용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간 적립된 금액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시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기존 납부한 적립금 비율(용도발생 전 3개월 평균비율)에 따라 업체간 공동 부담한다.

제19조(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) ① 운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관리기관은 다음

-----.

④사용료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시설개선충당금) ①시설개선충당금-----

-----.

1. -----
-- 신규투자,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한 용역, 연구개발 등의 용도.

2. 추가비용 선납부.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시설개선충당금-----

시설개선충당금 -----

-----.

제19조(사용료의 부과방법) ①-----

사용료-----

달 15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고지하되 납부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.

② 유지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0조(유지관리비의 추정) ① 운영자는 사업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등을 배출함으로서 폐수관거나 처리시설의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21조(부과금 등의 부담) ① 처리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「법」 제41조 제1항 제1호의 “기본배출부과금”(이하 “부과금 등”이라 한다)을 부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2조(부과금 등의 부과방법) ① 부과금 등의 부과방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부과

-----.

② 사용료 -----
----- 사용료 -----
-----.

제20조(추가비용의 추정) ① -----

----- 관로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부과금 등의 부담) ① -----
----- 있어 법 제41조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부과금 등의 부과방법) ① -----
----- 사용료 -----

방법을 준용한다.

②운영자는 징수유예 등으로 부과금 등을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부과금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 적립금으로 선납하여 줄 것을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23조(부담금의 별도관리) ① (생략)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 설치재원을 별도로 관리·운영할 경우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29조(강제징수) ① (생략)

②채납부담금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0조(사용의 제한) 운영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

-----.

②-----

----- 시설개선충당금 -----

-----.

제23조(부담금의 별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경우

에는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---

-----.

제25조의2(부담금의 지원 등)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강제징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절

차는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제2

0조-----.

제30조(사용의 제한) -----

----- 관로 -----

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
이 경우 지체없이 관리기관에 보
고하여야 한다.

-----.